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3. 9 선고 2022가단361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C생) 사이에 2021. 10.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1. 10. 26. 접수 제552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최유빈

별지

1) 원고는 원상회복청구 이행의 상대방을 ‘원고’로 지정하였으나, 채권자취소소송의 목적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상회복하는데에 있고,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원상회복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상대방을 채무자인 ‘B’으로 선택한다.